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이승미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수단,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교통안전 점검, 특별교통안전진단, 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던 사항을 「교통안전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별로 ‘교통수단 안전점검’ 및 ‘교통시설 안전진단’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